

제339회 임시회
2015.04.30.(목)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04.30.(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15년 04월 13일

다. 회부일자: 2015년 04월 14일

라. 상정일자: 2015년 04월 22일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관 김왕년)

가. 제안이유

투자심사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제고하도록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민간위원의 비율을 4분의 3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법」(14.5.28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어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맞게 따로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가) 교육재정투자,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의 의무부담 등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함
- 2)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가)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 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도록 함
 - 다)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규정함
- 3)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5)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3조)
-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반기환)

- 본 제정조례안은 투자심사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제고하도록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맞게, 현재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서 대신 기능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따로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① 교육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② 채무부담행위 ③ 보증채무부담행위 ④ 예산외의 의무부담 등
교육재정투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였고,

- 안 제3조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3명, 위촉직 위원은 12명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하였고,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에는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080호, 2014. 2.14.시행) 제15조에 따라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적정을 기하였음
- 안 제4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두어 불공정한
심사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위원의
해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두어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 적정성을
확보하였고,
- 안 부칙 제3조는 본 조례 제정으로 필요 없게 된 기존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4조(기능) 3호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바르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첨부서류: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제37조의2에 따라 교육재정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3. 그 밖에 교육재정투자자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교육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관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

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인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7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안건의 배부)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능) 위원회는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이하 "지방교육재정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2. (생략)</p> <p><u>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p> <p>4. ~ 5. (생략)</p>	<p>제4조(기능) -----</p> <p>-----</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삭제></p> <p>4. ~ 5. (현행과 같음)</p>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시행 2015.1.1.][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 지방자치법[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